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6. 12.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5월 30일

나. 제출자 : 김용범 의원 외 8인

다. 회부일자 : 2012년 6월 4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 6. 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용범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고 영등포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영등포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생명이 존중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4조)
-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조)
- 구청장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할 수 있으며,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8조)
-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9조)
-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 구청장은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제를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12조)
- 구청장은 자살 관련 상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 구청장은 구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함.
(안 제14조)
-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5조)
- 구청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6조)
- 자살예방과 관련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됨.(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노상옥)

- 이 조례안은 자주 접하게 되는 청소년들의 자살소식과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 라는 불명예 기사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 안 제4조에 영등포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생명이 존중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 구청장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에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제를 수집·분석할 수 있으며,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에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에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 구청장은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3조에 구청장은 자살 관련 상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4조에 구청장은 구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 안 제15조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6조에 구청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17조에 자살예방과 관련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비밀누설 금지조항을 규정함.
-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 30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해야 할 책무를 갖게 되고, 최근 자살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 됨에 따라 우리구의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며
- 본 조례 제정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킴으로서 영등포구에서 자살의 위험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 마지막으로 배부된 구청 관련 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 번호	128
----------	-----

발의연월일 : 2012년 5월 24일

발 의 자 : 김용범 의원 외 8명

1. 제안이유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고 영등포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영등포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생명이 존중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4조)
- 다.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조)
- 라. 구청장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안 제7조)

- 마.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할 수 있으며,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8조)
- 바.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9조)
- 사.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부터 제11조까지)
- 아. 구청장은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12조)
- 자. 구청장은 자살 관련 상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 차. 구청장은 구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함.(안 제14조)
- 카.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5조)
- 타. 구청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6조)
- 파. 자살예방과 관련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 하거나 발표해서는 안됨.(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다. 합 의 : 건강증진과 합의

라. 기 타 : 조례안 별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지역사회 공동체에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② 자살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므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

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 및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의 장, 기관의 장, 사업주는 생명이 존중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살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관리
3. 자살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4. 아동·청소년·중년층·노년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5.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
7.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8. 생명존중문화의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
9.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자살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실태파악을 위해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이전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해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및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자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살자 등에 관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회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복지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1명

2. 구 정신보건센터장

3. 사회복지·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⑥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제12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 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구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사상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③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의 장, 기관의 장, 사업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들의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